

2022년 신원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11. 07. ~ 11. 09.(3일)
- 감사범위 : 2019. 11. 23.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7명

II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계	환수	부과	추징	계	훈계	경징계	중징계
계	27	8	19	18,349	2,021	-	16,328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4	11	16,328	-	-	16,328	-	-	-	-
현지 조치요구	12	4	8	2,021	2,021	-	-	-	-	-	-

III 주요 지적사항

1] 회계·계약분야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등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3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품(선물)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지원) 명목으로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되어야 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 등 총 2건, 689,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함.

나. 업무추진비 비 집행대상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할 것임에도,
-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출산가정 축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상품권, 기저귀 등 총 3건 538,800원을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다. 상품권 등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상품권, 기념품 등 총 16건, 6,286,000원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라. 화환·화분·기념품 등 제공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기념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또는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회의소 회장 취임식' 등 총 2건, 100,000원의 화환을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마. 법인카드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품의-원인 행위-지출' 순으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 사전 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제 승인을 받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지정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미이행

지정폐기물(슬레이트) 분리발주 無, 석면해체업자에게 부적정 일괄발주

- 지정폐기물(슬레이트 등)은 석면 해체·제거(공사)와 분리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발주 처리하여야 함에도,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인 (주)○○○○○에 일괄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전문공사 계약 부적정

1,500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발주 시 전문공사 미 면허업체와 계약체결

- ‘◆◆◆◆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에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해당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해당 전문공사 미 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4)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용역제공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전액 사전 지급

- 용역의 대가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 '2021년 신원면사무소 무인기계시스템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제공에 대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채권도 확보하지도 않은 채 계약금액(2,534,400원)의 전액을 사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농업분야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부합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서 부적정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인 읍·면장은 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신청인의 자격증명발급요건 부합여부를 확인·심사하여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일,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발급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 신원면 ☆☆리 ▽▽, 신원면 ★★리 ▽▽-▽의 농지 일부가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지의 복구가능성도 희박함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부적절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3] 건설공사분야

1) 감악 밤숲 진입로 정비공사 소하천 점용허가 미이행

소하천 구역 내 인공 구조물 설치공사, 소하천 점용허가 미이행

- 소하천 구역에서 인공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소하천 관리청에 소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공사하여야 하나,
- ‘○○○ ○○○ 진입로 정비공사’의 경우 공사 구간 내 소하천 횡단 BOX의 구조물이 신원면 □□리 △△△번지 일원의 소하천 구역(신기3천)에 해당 됨에도,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미이행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처리, 분리 발주 없이 시공사 직접 시행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 ■■■■■ 뒷길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도급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시행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10톤 이상 건설폐기물 공사, 준공 시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미확인

- 1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반영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준공 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중량계근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나,
- '★★ ★★★ 밤들 진입로 정비공사' 등 47건에 대하여 설계 도급내역에 1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준공 시 폐기물처리 계획 신고사항,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중량계근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건설공사 분리발주 추진 부적정

10톤 이상 건설폐기물 공사, 준공 시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미확인

- '◎◎ 저수지 준설공사' 등 6건은 아스콘 포장공사 등에 해당하는 단일 공종으로 사업시행 시기가 일치하여 통합발주를 통하여 중기운반 등 중복된 공정에 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음에도,

- 이를 동일한 시공업체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비록 이를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중기운반 공중에 대해 이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세정분야

1)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

미신고·납부 상속재산 취득세, 16,328,920원 과세 누락

-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16,328,92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소홀

과세대장 미정비로 인한 비감면 대상에 대한 재산세 부당 감면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법인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농업법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 과세대장을 정비하지 아니하여 신원면 ◇◇리 △△△-△번지 등 3건의 물건(토지, 건물)에 대해 관행적으로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부당하게 감면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3) 주택,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누락

과세물건에 대한 공부 확인 소홀로 인한 과세대장 누락(4건)

-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으로 확인되는 과세물건은 물론, 불법 건축물 등 공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과세물건의 경우에도 현황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공부상 사용승인이 확인이 되지 않는 3건(주택 2건, 건축물 1건)과 공부상 사용승인이 확인 되는 1건(건축물 1건)에 대해 과세대장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음.

4) 지방세 체납 관리 소홀

체납지방세 자체 징수계획 미수립 등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소홀

- 체납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면 자체실정에 맞는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별 관리카드 작성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체납자를 상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면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내 체납자에 대한 관리담당자 미지정, 실태조사에 따른 체납자 관리카드 미작성 등 체납사유나 징수전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사회복지분야

1) 저소득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업무 소홀

지원사업 대상자(4명)에 대한 사업안내 및 직권 신청 미이행

-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사업 대상자(신규 및 재판정) 4명에 대하여 사업 안내 및 직권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급여관리자 지정 여부 미확인 등 수급자 급여에 대한 지도·관리 소홀

- 읍·면장은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이외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사용) 실태를 대상 주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나,
- 의사무능력자에 2가구 2명에 대해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본인관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대상의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출되고 있음에도, 지도·관리를 하지 않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